



전 화 : (02) 599-8969 **법무법인 케이씨엘** 팩시밀리 : (02) 599-896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508호 (우: 06601)

수 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일 자: 2019. 10. 28.
 참 조: 최상문 주무관님, 이다현 주무관님
 제 목: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수당 소급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회신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제목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 회신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다 음

I. 질의의 배경

2018. 12. 15. 강남구의회 제27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2019년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강남구체육회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로 2019. 2.과 2019. 3.경에 귀 구의 문화체육과로 별도 수당신청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 8. 16. 강남구체육회에서는 귀 구 문화체육과에 수당 지급 요청 공문을 발송해 온 바 있었으나, 해당 공문에는 2019. 1.부터 2019. 8.까지의 요청기간, 요청금액 19,199,964원, 예산과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당 법무법인에게 질의를 하였던 바,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II. 질의의 내용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수당 소급 지급 가능 여부

III. 질의에 대한 회신

우선, 2018. 12. 15. 강남구의회 제27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2019년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바 있는 점, 이는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던 점, 비록 수당이 보조금(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으로 편성된 예산이지만, 2019년 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임은 분명해 보이는 점,

강남구체육회에서 2018. 8. 16. 최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일부 미비하기는 하나 이는 보조금 지급 전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귀 구에서는 강남구체육회가 추후 보완할 예정인 월별 근무내역 등을 통해 실제 해당 직원이 제대로 근무한 것이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당 수령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귀 구가 사무국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징구하고 소급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2019. 1. 1.부터 2019. 8. 31.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불만한 특별한 근거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귀 구는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수당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결론

귀 구는 강남구체육회 사무국 직원수당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의견은, 귀 구가 제공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의견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 성 철
담당변호사 최 영 식
(직인생략)